

채무증서

귀하

수입
인지

년 월 일
채무자의 주소

성명

(인)

채무자는 국가에 대한 채무(채무자의 명칭)의 원금 원과 이자·가산금 및 연체금
원을 다음 제1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행함과 동시에 채무이행에 관하여 다
음 제2부터 제6까지에 적힌 조건에 따른다.

제1. 이행기한·연납이자 및 연체금

가. 채무자는 국가에 대한 채무원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이행기한			이행하여야 할 금액
년	월	일	원
년	월	일	원

나. 위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각각의 이행기한까지의 기간
년의 연납이자를 국가에 지급한다.

다. 위의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완납하지 않은 금액
에 대하여 원의 연체금을 국가에 지급한다.

제2. 국가가 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,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상황에 관한 질문,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3. 국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위 제1의 가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한의 단축을 채무자에게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가.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, 처분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또는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채무자가 분할된 변제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
다. 채무자에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

- 1)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- 2)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3) 그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는 경우
- 4)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5) 법인이 해산한 경우
- 6) 채무자에게 상속의 개시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
- 7) 위 4)부터 6)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경우

라. 채무자가 이 채무증서에 적힌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

마. 그 밖에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제1의 가에 따른 이행기간을 인
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. 담보가격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을 부적당하게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는 국 가의 청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 제공,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.

제5.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일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.

제6.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